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1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위성곤·문대림·한병도

양부남 • 박정현 • 김성회

모경종 · 김원이 · 이기헌

한준호 · 강선우 · 허 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의 국내총생산(GDP)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% 안팎으로, 전 세계 평균 10.4%에 크게 밑돌며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.

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·지원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,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문화, 산업, 의료, 외교, 홍보, 교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함.

그러나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, 예술, 미디어컨텐츠, 종무, 국민소통, 체육 등 단일 부처가 소화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수준인 6가지 이질적인 기능과 함께 담당하고 있어, 이로 인한 정책적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

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 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, 최근 성장추세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관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촉발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6조 및 제36조). 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외교부·문화체육관광부"를 "외교부·문화체육부"로 한다.

10. 문화체육부

제36조의 제목 "(문화체육관광부)"를 "(문화체육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을 "문화체육부장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문화체육관광부"를 "문화체육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을 "문화체육부장관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관광청을 둔다.
- ⑥ 관광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	문화체육부장관	
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		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	리 리 키 키	
제36조제5항에 규정된 사무	관광청장	

-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 또는 관광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-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문화체육부령으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에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·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. 이 한 같다)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

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,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	제26조(행정각부) ①
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	
둔다.	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문화체육관광부	<u>10.</u> 문화체육부
11. ~ 19. (생 략)	11. ~ 19.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	2
관 1명을 두되, 장관은 국무위	
원으로 보하고, 차관은 정무직	
으로 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・	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<u>외교부 ·</u>	<u>외교부 •</u>
<u>문화체육관광부</u> · 산업통상자원	문화체육부
부・보건복지부・국토교통부에	
는 차관 2명을 둔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6조(문화체육관광부) ① 문화	제36조(문화체육부) ① 문화체육
<u>체육관광부장관</u> 은 문화·예술	<u> 부장관</u>
·영상·광고·출판·간행물·	
체육・관광, 국정에 대한 홍보	
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	
장한다.	
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	② <u>문화체육부</u>
명을 둘 수 있다.	
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	③

장하기 위하여 <u>문화체육관광부</u> <u>장관</u>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.

④ (생 략)

<신 설>

<u><신</u>설>

-----문화체육부장관

----.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관광청을 둔다.
- ⑥ 관광청에 청장 1명과 차장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.